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8859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이 개정되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원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② (생략) <u><신설></u>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말한다.</u>

보 조 금 지 원 신 청 서

사업명						
신청인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신청예산	일금 원()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광역	기초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주요 사업내용					
문화재 공개 현황	문 화 재 명		소 재 지			
관람료 감면시기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관람료 징수현황	징수연도	관람객수(명)			관람료 수입(원)	비고
		유료	무료	합계		
사업담당자	소유자(관리단체)		대리인 *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기 관 명(부서명)		기 관 명(부서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상기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